

복지 시설 대여 규정

제정 1994. 2. 21.
1차 개정 2019. 06. 25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의 후생, 복지를 위한 시설을 타인(이하 “운영자”라 한다)에게 대여하여 운영하게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설사용) 본 대학교에서 대여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

1. 구내식당
2. 구내매점
3. 기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복지시설

제3조(운영자의 자격) 전조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.

1. 사상이 건전하고 신원이 확실한 자.
2. 시설물 운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.
3.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.

제4조(대여제한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자가 될 수 없다.

1. 본 대학교 교직원 및 그 가족
2. 법인사무국의 임직원 및 그 가족.
3. 본 대학교 재학생 및 그 가족 (단 재학생 입학전에 학교시설물의 운영자는 제외한다.)

제5조(계약체결) 시설을 대여할 때는 본 대학교와 운영자 간에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.

1. 대여기간.
2. 대여목적(운영자가 할 사업의 종류)
3. 사용료
4. 운영자가 본 대학교에 예치할 보증금 및 임대료

제6조(대여기간) 대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갱신할 수 있다.

제7조(계약사무) 시설의 대여에 필요한 사업자선정, 계약, 갱신 및 해약은 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계약체결과 그 이후의 관리는 **학생행복처장**이 관리한다. (개정 2019.06.25)

제8조(주무) 전 조의 사무는 학생행복처 **학생행복팀**에서 관장한다. (개정 2019.06.25)

부칙

이 규정은 199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